

심 사 보 고 서

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

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01 |
|----------|-----|

2019. 12. 2.(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1월 26일

-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안석영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시청자미디어
재단 출연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
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□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비 출연 : 2,260백만원

- 도민의 미디어활동 촉진과 영상문화 활성화 선도,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 출연금 지원 필요('18년 방송통신위원회 공모사업 선정)
- 충청북도, 방송통신위원회, 시청자미디어재단, 청주시 간 「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에 의거 2020년 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비 중 충청북도 부담분(20%) 출연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광영학)

-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도민의 미디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유치·설립하는 센터로서 도민 대상 미디어교육, 미디어시설장비 지원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활용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함.
- 현재, 부산, 광주, 대전, 강원, 인천, 서울, 울산, 경기센터 등 8개 시도에서 미디어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,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연면적 2,480㎡에 지상 5층 건물로 운영할 예정이며, 총 12명의 인력이 근무할 예정임.
-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도민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,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,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,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충북도민의 미디어활용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」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301 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2019년 월 일 (제 회) |

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|
| 제출연월일 | 2019년 10월 31일 |

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0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19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출연목적

- 도민의 미디어활동 촉진과 영상문화 활성화 선도,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 출연금 지원 필요('18년 방송통신위원회 공모사업 선정)
- 충청북도, 방송통신위원회, 시청자미디어재단, 청주시 간 「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에 의거 2020년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중 충청북도 부담분(20%) 출연

○ 출연 예정금액 : 226,000천원

- 출연근거 : 방송법 제90조의2
- 산출근거
 -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도 부담액 = 1,130,000천원 × 20% = 226,000천원

○ 출연금 내용

-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,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운영비

3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시청자미디어재단

< 출연 계획 >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|
| 사 업 명 |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| 출자·출연 금 액 | 226,000 천원 | | |
| 출자·출연 기 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 관 명 : 시청자미디어재단 ○ 대 표 : 신태섭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, 용산빌딩 4층 - 인 력 : 227명(정규직 211명, 비정규직 16명) - 주요사업 : 미디어에 관한 교육,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 | | | | |
| 사 업 내 용 | | | | | |
| 사업개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기간 : 2020. 1. ~ 12. ○ 사업내용 : 충북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(국비 매칭 지원) ○ 출연금액 : 226,000천원 | | | | |
| 출자·출연 필 요 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식정보사회에서 도민의 미디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·설립하여 도민 대상 미디어교육, 미디어시설장비 지원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활용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○ 방송법 제90조의2에는 이를 위해 지자체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| | | | |
| 근거·법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법 제90조의2 ○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협약('19.11.) | | | | |
| 검토의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은 「방송법」 제90조의 2,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센터운영비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연금 예산편성 반영이 필요함 ○ 방송통신기금 60%, 충청북도 20%, 청주시 20%의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도민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 및 권익보호 증진에 기여하고 미디어 전반에 관한 교육 및 체험공간 운영,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등의 사업 수행으로 도민의 미디어 활동 촉진과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므로 출연이 필요함 | | | | |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|
| 주관부서 | 정보통신과 | 소속부서장 | 팀 장 | 담당주무관 | 전화 |
| | | 유경수 | 원길연 | 허경희 | 220-2652 |

< 출연기관 현황 >

시청자미디어재단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설립근거 | 「방송법」 제90조의 2 (시청자미디어재단) | | | | 전화번호 : 02-6900-8312 | | |
| | | | | | 홈페이지 : kcmf.or.kr | | |
| 주요연혁~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'05.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o '07.~'15. 광주·대전·강원·인천 센터 개관 o '15.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o '15. 서울센터 개관 o '16. 공공기관 지정 o '16~'19. 울산·경기센터 개관 | | | 기관형태 | 위탁집행형 공공기관 | | |
| 인원현황 (‘19.10월 현원기준) | 계 | | 정규직 | | 비정규직 | | |
| | 227명 | | 211명 (무기직 66명 포함) | | 16명 | | |
| 임원현황 (‘19.10월 기준) | 직책 | 성명 | 주요경력 | | 임기 | | |
| | 이사장 | 신태섭 | 前 동의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| | ‘17.12월 ~ ‘20.12월 | | |
| | 이사(비상임) | 신선호 | 前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| | ‘17.12월 ~ ‘19.12월 | | |
| | 이사(비상임) | 김은경 | 現 경성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초빙교수 | | ‘17.12월 ~ ‘19.12월 | | |
| | 이사(비상임) | 손애경 | 現 글로벌사이버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| | ‘17.12월 ~ ‘19.12월 | | |
| | 이사(비상임) | 김동민 | 前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| | ‘19.10월 ~ ‘21.10월 | | |
| | 이사(비상임) | 김달진 | 前 KOBACO 전문위원 | | ‘19.10월 ~ ‘21.10월 | | |
| | 이사(비상임) | 양한열 | 現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| | 당연직 | | |
| | 감사(비상임) | 최성주 | 現.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| | ‘18.2월 ~ ‘20.2월 | | |
| 주요기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미디어에 관한 교육·체험 및 홍보 o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및 권익증진 o 장애인의 방송 시청 및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 지원 o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o 방송광고 및 방송시장 모니터링 등 시청자권익보호 | | | | | | |
| 자본금 (단위:백만원) | 1 | | | 출연금액 (단위:백만원) | | 1 | |
| 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 | 연도 | 2017 | 2018 | 2019 | 재무현황 (단위:백만원) '18.12.31.기준 | 자산 | 3,156 |
| | 예산액 | 29,057 | 34,684 | 43,346 | | 부채 | 3,329 |
| | 지자체 지원액 | 1,771 | 2,081 | 2,343 | | 자본 | (173) |
|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18.12.31.기준 | 총수익 | | | 총비용 | | 당기순이익 | |
| | 26,720 | | | 26,929 | | (209) | |

참고 1. 관련법규(방송법 제90조의2)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. <개정 2014.5.28., 2015.12.22.>

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 <개정 2014.5.28., 2015.12.22.>

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<신설 2014.5.28., 2015.12.22.>

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신설 2014.5.28., 2015.12.22.>

1. 미디어에 관한 교육·체험 및 홍보

2.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

3.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

4.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
5.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

6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5.12.22.>

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신설 2014.5.28., 2015.12.22.>

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, 2015.12.22.>

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5.28., 2015.12.22.> [본조신설 2012.1.17.]

참고 2.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 현황

□ **설립근거** : 방송법 제90조의2 “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”

「방송법」 제90조의2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.

□ **주요 기능**

- 국민의 미디어역량 향상을 위한 미디어 교육·체험·홍보·연구활동
- 시청자권익증진을 위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
-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
- 장애인방송, 방송수신기 보급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향상
- 방송광고 및 불공정 방송시장 모니터링 등 시청자 권익 보호

□ **기관 설립** : 2015. 5. 15.

□ **기관 연혁**

- '05년 : 舊 방송위,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
- '07~'16년 : 7개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
 - ※ 부산, 광주, 강원, 대전, 인천, 서울, 울산센터
- '15년 :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·출범
 - ※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통합 관리 및 시청자권익사업 체계적 운영
- '16년 : 시청자미디어재단 공공기관(준정부기관) 지정
- '19년 :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예정
- '20년 :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예정

□ **조직** : 2본부 2팀 / 정원 225명

□ **예산** : '19년 433억원

- 정부예산 403억원, 지자체예산 23억원, 기타 7억원

참고 3.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

□ 개 요

- 위 치 : 청주시 문화제조창 內
- 개 관 일 : 2020년 3월 예정
- 연 면 적 : 2,480m²(750평), 지상 5층
- 운영인력 : 12명(센터장 1, 팀장 2, 직원 9)
- 주요시설 : 디지털교육실, 방송제작스튜디오, 편집실, 미디어체험관 등
- 사업내용 : 미디어 교육, 방송체험 및 참여 지원, 장비대여 등

※ 구축장소(舊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건물내)



□ 주요기능

| 구 분 | 주 요 내 용 |
|-----------------|--|
| 미디어 교육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에 대한 접근능력, 비판적 이해능력, 민주적 소통능력 증진 |
|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청자가 제작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증진에 기여 ▷ KBS ‘열린채널’ ※ 시청자참여프로그램 : 시청자가 직접 기획·제작한 프로그램(방송법제69조제7항) |
|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돌아보고 공동체의 삶을 표현하는 마을미디어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|
|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·청각장애인들에게 장애인방송(자막, 화면해설, 수화 등) 제작 지원 -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방송 접근권 보장 |
| 방송시설 및 장비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청자가 방송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방송제작 시설장비 등 무료 제공 |
|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송제작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관 운영 · 방송장비 : 디지털카메라, HD캠코더, 휴대용녹음기, 무선마이크 · 방송시설 : 미디어교육실, 다목적홀, 세미나실, 회의실, 녹음실, 교육장, 미디어체험관, 방송제작스튜디오 등 |

□ 방송시설 및 장비현황

| | | | |
|---|---|--|---|
| 1) 방송시설 | | | |
|  |  |  |  |
| 방송제작스튜디오 | 다목적홀 | 녹음실 | 디지털교육장 |
|  |  |  |  |
| 미디어체험관 | 1인 미디어제작실 | 편집실 | 세미나실 |
| 2) 방송장비 | | | |
|  |  |  |  |
| 디지털카메라 | 캠코더 | 무선마이크 | 휴대용녹음기 |
|  |  |  |  |
| 편집용 노트북 | LED 조명 | 디퓨저 | 삼각대 |

□ 타시도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현황(7개소)

| 기관명 | 구축연도 | 주요내용 | 이용자현황('18년) |
|-----|------|--|-------------|
| 부산 | 2005 |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산시 해운대구 · 연면적 5,021㎡, 지하1~지상4층 · 건립비 126억, 현원 13명 | 106천명 |
| 광주 | 2007 |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광주시 서구 · 연면적 6,075㎡, 지하1~지상4층 · 건립비 155억, 현원 13명 | 108천명 |
| 강원 | 2014 |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강원도 춘천시 (복합건물) · 연면적 2,328㎡, 지하1~지상2층 · 건립비 59억, 현원 13명 | 64천명 |
| 대전 | 2014 |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전시 유성구 (복합건물) · 연면적 2,926㎡, 지상1,4층 · 건립비 53억, 현원 13명 | 83천명 |
| 인천 | 2014 |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천시 연수구 (복합건물) · 연면적 2,584㎡, 지상3~4층 · 건립비 34억, 현원 13명 | 90천명 |
| 서울 | 2015 |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시 성북구 (복합건물) · 연면적 521㎡, 지상2~3층 · 구축비 21억, 현원 5명 | 53천명 |
| 울산 | 2016 |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울산시 북구 · 연면적 2,316㎡, 지상1~4층 · 건립비 50억, 현원 13명 | 72천명 |